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25 선고 2024가단2204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, 담당변호사 전이섭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, 담당변호사 함영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신

변론 종결2024. 9. 13.

판결 선고2024. 10. 25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10. 27. 체결된 매매계약을 225,2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25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

별지 기재와 같다.

2. 판단

가. 갑 제2, 5, 6,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C 대하여 407,690,754원 상당의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, 이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C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.

나.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이나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

다. 또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을 제1 내지

제1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는 C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D의 아파트 매물을 찾던 중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매물을 둘러본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C이 사해의 의사로 처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자 수익자로 인정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김유성

별지